금융위원회고시 제2021-45호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분기 단위로 다음"을 "다음"으로, "신용대출상품의 해당분기 대출"을 "신용대출"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"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"를 "대출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가중평균금리가"를 "금리상한이"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6(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)	제4조의6(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)
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서 "금융위	
원회가 정하는 대출등"이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	
말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분기 단위로 다음</u> 각 목의 요건을	2. <u>다음</u>
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<u>신용대출</u>	<u>신용대출</u> .
상품의 해당분기 대출. 다만, 종료되	<u><단서 삭제></u>
지 않은 분기 중에 취급한 대출의 경	
우 해당 분기 종료까지는 다음 각 목	
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	
<u>다.</u>	
가. 개인신용평점(「신용정보의	가
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	
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	
사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	
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	
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	
회사는 제외한다)로부터 제공받은	
것을 말한다)이 하위 100분의 50에	
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<u>대출취급액</u>	
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	<u>대출</u>
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	
분의 70이상인 경우	
나. <u>가중평균금리가</u> 100분의 8.5이	나. <u>금리상한이</u>

하인 경우

<u>다. 최고금리가 100분의 12 미만 <삭 제></u> 인 경우

라.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 <삭 제>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목부 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 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<u>상품임을 공시한 경우</u>